성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6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 성주군에 경제적이며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시가스 사업자의 투자 사업비 부담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 성주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안 제3조)

나. 지원범위 : 가스본관, 정압기, 공급관 설치비 등(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및 제19조의3

나. 예산조치 : 총 70억 정도(5년간 균분지원)

다. 기 타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성별영향평가 분석 : 원안동의

3)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6. 11. 10. ~ 11. 30.)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성주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스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G/S)에서 각 지역에 설치하는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10㎏/㎠)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의한 사업자이며 성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가능구역에 한한다.

제4조(지원범위)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스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
3. 공급관 설치비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의 재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6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사항 규정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정의(안 제2조)
나.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안 제3·4조)
다. 전용금지에 관한 규정(안 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6조의2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분석 : 원안동의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6. 11. 10. ~ 11. 30.)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에 따른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